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 영 근

1. 시작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비록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영역 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논의·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사회양극화, 불평등이 도를 넘으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공감대와 그 보완 모색이라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부분적으로 극복, 보완하고자 생겨난 자조조직이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수많은 변천을 통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다. 또한 경제위기에는 지역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으로 그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영역(예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주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통

하여 사람중심의 경제, 주민의 적극적 참여, 지역의 내부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자본 형성 등에 의해 제주지역 사회공동체를 재복원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소비가 지역공동체 내에서 선순환 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근본 취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책목표를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정착을 지향하고 있어 제주도정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8개 개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신규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전체 도민의 약 30%¹⁾에 달할 정도로 협동조합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경제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민생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본주의에 대한 보완인지에 대해 과학적 연구나 도민들 간의 합의 형성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도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015년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7,751개, 제주지역 113개의 다양한 신규 협동조합이 창업하였다. 그러나 신규 협동조합이 전체 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규모 및 조합원 수)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계획했던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협동조합이 많아 너무 빠른 창업속도에 비해 내실 있는 협동조합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제주지역의 협동조합 현황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 현황

1) 전국협동조합 현황(2015년 8월 31일 기준)

(1) 전국협동조합 현황

1) 제주발전연구원(2013),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전국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이후 2015년 8월 31일까지 총 7,7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는 월평균 약 235개가 설립된 것이다.

설립된 전체 협동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이 전체의 95.3%(7,385개)로 나타났으며,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전체의 4.2%(322개)로 설립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총 44개로 전체 협동조합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합회 설립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44개 연합회가 수리되었으며, 이 중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40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4개로 나타나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95% 이상으로 설립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전국협동조합 현황

(단위: 개, %)

구분	협동조합 수	비율
일반협동조합	7,385	95.3
사회적협동조합	322	4.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0	0.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0.0
총 계	7,751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2)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2,081개 수리), 경기도(1,279개 수리), 광주광역시(509개 수리), 전라북도(483개 수리), 부산광역시(414개 수리), 강원도(381개 수리), 대구광역시(328개 수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16개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5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 포함)이 설립²⁾되었으며, 이는 전국협동조합의 약 1.5%에 해당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11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 통계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³⁾

2) 기획재정부(2015.10)

3) 2015년 8월 31일 기준

〈표 2〉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지역	협동조합 수	비율	지역	협동조합 수	비율
강원도	381	4.9	세종특별자치시	34	0.4
경기도	1,279	16.5	울산광역시	154	2.0
경상남도	279	3.6	인천광역시	232	3.0
경상북도	309	4.0	전라남도	309	4.0
광주광역시	509	6.6	전라북도	483	6.2
대구광역시	328	4.2	제주특별자치도	116(113)	1.5
대전광역시	310	4.0	충청남도	271	3.5
부산광역시	414	5.3	충청북도	262	3.4
서울특별시	2,081	26.8	계	7,751(7,748)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주) 제주지역의 ()는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통계자료임

〈표 3〉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지역	협동조합 수	지역	협동조합 수
강원도	366	세종특별자치시	30
경기도	1,190	울산광역시	151
경상남도	268	인천광역시	217
경상북도	304	전라남도	303
광주광역시	500	전라북도	473
대구광역시	311	제주특별자치도	110
대전광역시	290	충청남도	257
부산광역시	397	충청북도	253
서울특별시	1,963	계	7,383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표 4〉 지역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현황

(단위 : 개)

지역	협동조합 수	지역	협동조합 수
강원도	-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도	2	울산광역시	1
경상남도	1	인천광역시	1
경상북도	-	전라남도	2
광주광역시	4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2	제주특별자치도	1
대전광역시	4	충청남도	1
부산광역시	5	충청북도	1
서울특별시	14	계	40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표 5〉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지역	협동조합 수	지역	협동조합 수
강원도	15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87	울산광역시	2
경상남도	10	인천광역시	14
경상북도	5	전라남도	4
광주광역시	5	전라북도	8
대구광역시	15	제주특별자치도	5
대전광역시	15	충청남도	13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8
서울특별시	102	계	322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표 6〉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현황

(단위 : 개)

지역	협동조합 수	지역	협동조합 수
강원도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인천광역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1	충청남도	-
부산광역시	1	충청북도	-
서울특별시	2	계	4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3)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

유형별 전국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5,640개(7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1,161개(15.0%), 직원협동조합 340개(4.4%), 소비자협동조합 244개(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66개(4.7%)로 나타났다.

〈표 7〉 유형별 전국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협동조합 수	비 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1,161	15.0
사업자협동조합	5,640	72.8
소비자협동조합	244	3.1
직원협동조합	340	4.4
기 타	366	4.7
총 계	7,751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4) 소관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소관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6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부 57개, 기획재정부 31개, 문화체육관광부 26개, 농림축산식품부 19개, 여성가족부 1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소관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소 관 부 처	협 동 조 합 수	소 관 부 처	협 동 조 합 수
고용노동부	66	산림청	6
교육부	57	산업통상자원부	8
국가보훈처	1	여성가족부	13
국토교통부	7	외교부	2
금융위원회	1	중소기업청	2
기상청	1	통일부	1
기획재정부	31	해양수산부	1
농림축산식품부	19	행정자치부	7
문화체육관광부	26	환경부	5
미래창조과학부	2	계	322
보건복지부	66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5)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968개(2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979개(12.6%), 농업·어업 및 임업 845개(10.9%), 제조업 625개(8.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4개(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78개(7.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1개(4.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4개(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업종별 전국협동조합 현황

(단위: 개, %)

업종	협동조합 수	비율	업종	협동조합 수	비율
가구내 공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0	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50	3.2
건설업	210	2.7	숙박 및 음식점업	256	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4	8.1
광업	4	0.0	운수업	190	2.5
교육 서비스업	979	12.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8	0.6
국제 및 외국기관	5	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58	3.3
금융 및 보험업	1	0.0	제조업	625	8.1
농업·어업 및 임업	845	10.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4	4.1
도매 및 소매업	1,968	25.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92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1	4.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78	7.5
부동산업 및 임대업	82	1.1	계	7,751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2)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2015년 8월 31일 기준)

(1) 협동조합 현황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2015년 8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이 110개(94.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5개(4.3%)로 나

타났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1개도 설립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협동조합 수	비율
일반협동조합	110	94.8
사회적협동조합	5	4.3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	0.9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총 계	116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2)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

제주지역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6개 협동조합 중 사업자협동조합이 71개(61.2%),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2개(19.0%), 소비자협동조합이 10개(8.6%), 직원협동조합이 7개(6.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업자협동조합이 도내 일반협동조합 중 절반이 넘게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기타 6개(5.2%)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나타났다.

〈표 11〉 제주지역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협동조합 수	비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2	19.0
사업자협동조합	71	61.2
소비자협동조합	10	8.6
직원협동조합	7	6.0
기타	6	5.2
총 계	116	1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5.10), 연구자 분석

(3) 설립연도별 협동조합 현황

제주지역 협동조합은 2013년 52개, 2015년 31개, 2014년 29개, 2012년 1개 등의 순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협동조합이 총 116개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113개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

〈표 12〉 설립연도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설립	협동조합 수	비율
2012년	1	0.9
2013년	52	46.0
2014년	29	25.7
2015년(8월 31일 기준)	31	27.4
계	113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10), 연구자 분석

(4)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도내 협동조합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99개(87.6%), 서귀포시 13개(11.5%)로 제주시 지역에 협동조합이 편중되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지역구분		협동조합 수	비율
제주시	동지역	80	70.8
	읍면지역	19	16.8
서귀포시	동지역	4	3.5
	읍면지역	9	8.0
기타(전남 완주군)		1	0.9
계		113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10), 연구자 분석

주) 전라남도 완주군 1개가 포함되어 있음

(5) 출자금 규모별 협동조합 현황

출자금 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500만원 미만이 35개(3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00만원 이상이 32개(28.3%), 500만원~1,000만원 미만 19개(16.8%), 1,000만원~1,500만원 미만 12개(10.6%), 100만원 미만 10개(8.8%), 1,500만원~2,000만원 미만이 5개(4.4%)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출자금 규모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출자금	협동조합 수	비율
100만원 미만	10	8.8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5	31.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9	16.8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2	10.6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5	4.4
2000만원 이상	32	28.3
계	113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10), 연구자 분석

(6) 설립동의자(조합원) 규모별 협동조합 현황

설립동의자(조합원) 규모를 살펴보면 5명~10명 미만의 협동조합이 81개(71.7%), 10명~30명 미만의 협동조합이 27개(23.9%), 30명~50명 미만의 협동조합이 2개(1.8%), 50명 이상의 협동조합이 3개(2.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표 15〉 참조), 전체 협동조합의 71.7%인 81개가 설립동의자 10명 미만인 소규모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설립동의자(조합원) 규모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설립동의자 규모	협동조합 수	비율
5명 이상~10명 미만	81	71.7
10명 이상~30명 미만	27	23.9
30명 이상~50명 미만	2	1.8
50명 이상	3	2.6
계	113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10), 연구자 분석

(7)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

유형별로 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72개(6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4개(21.2%), 소비자협동조합 10개(8.9%), 직원협동조합 7개(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전체 협동조합의 63.7%인 72개가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나타났다.

〈표 16〉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조합유형	협동조합 수	비율
사업자협동조합	72	63.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4	21.2
소비자협동조합	10	8.9
직원협동조합	7	6.2
계	113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10), 연구자 분석

도내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3개 협동조합(총 설립동의자 수 1,275명) 중 사업자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는 837명(6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57명(20.2%), 소비자협동조합이 132명(10.4%), 직원협동조합이 49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업자협동조합이 도내 협동조합 중 절반이 넘게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제주의 협동조합 설립동의자(조합원) 수(1,275명)는 전국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수(109,492명)⁴⁾의 1.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협동조합 출자금 총액은 3,150,960천원(출자금 평균금액 약 27,885천원)으로 사업자협동조합 2,085,080천원(66.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비자협동조합 484,600천원(15.4%), 직원협동조합 295,000천원(9.3%),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86,280천원(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기획재정부(2015.10), 내부자료

특히,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수나 설립동의자 수에서 사업자협동조합 다음으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나, 출자금 총액에서 만큼은 협동조합의 수나 설립동의자 수가 가장 적은 직원협동조합보다도 적게 나타나 유형별 협동조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협동조합 개수는 49개, 1천만원 미만 협동조합 개수는 64개로써 1천만원 미만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79,010천원, 출자금 평균금액은 약 2,797천원으로 나타났다.

5천만원 이상 협동조합 개수는 13개로써 출자금 총액은 2,159,000천원, 출자금 평균금액은 약 166,077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5천만원 이하 협동조합 개수는 100개로써 출자금 총액은 991,960천원, 출자금 평균금액은 약 8,77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7〉 도내 유형별 협동조합에 따른 협동조합 수, 설립동의자 수, 출자금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

유형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소비자	직원	총계
협동조합 수	24 (21.2)	72 (63.7)	10 (8.9)	7 (6.2)	113 (100.0)
설립동의자 (조합원) 수	257 (20.2)	837 (65.6)	132 (10.4)	49 (3.8)	1,275 (100.0)
출자금 소계	286,280 (9.1)	2,085,080 (66.2)	484,600 (15.4)	295,000 (9.3)	3,150,960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10), 연구자 분석

(8)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도내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어업 및 임업이 35개(3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각각 9개(8.0%), 교육 서비스업과 운수업이 8개(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개(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도내 업종별 협동조합은 농업·어업 및 임업이 3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0.9%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도내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

업종	협동조합 수	비율
건설업	4	3.5
교육 서비스업	8	7.1
농업·어업 및 임업	35	31.0
도매 및 소매업	9	8.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5.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8.0
운수업	8	7.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2.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3.5
제조업	6	5.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	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0.9
숙박 및 음식점업	2	1.8
계	113	1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10), 연구자 분석

3.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지원 사업

1) 협동조합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역량 강화사업으로 2013년 8천만원, 2014년 6천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은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협동조합 인재 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협동조합 인재 아카데미사업으로 2013년 2천만원, 2014년 1천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은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시사점

첫째,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구성

제주의 협동조합의 수는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나, 설립동의자(조합원) 수는 약 1.2%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수 109,492명).

또한 제주시(87.6%)에 비해 서귀포시(11.5%)가 협동조합 설립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별 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63.7%)이 도내 협동조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는 초보적 수준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교육, 인재양성, 컨설팅 등 제주도의 지원 확대와 경영 내실화를 위한 협동조합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협동조합의 경영 내실화가 수적 증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므로, 협동조합의 성공적 안착과 자립기반 구축 등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적은 설립동의자(조합원) 수

도내 협동조합 설립동의자(조합원)는 총 1,275명으로 협동조합당 평균 설립동의자는 약 11.3명으로 나타났고, 전체 협동조합의 71.7%인 81개가 설립동의자 10명 미만인 소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협동조합의 65.6%인 837명이 사업자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수의 조합원 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업종별 편중된 협동조합

도내 업종별 협동조합은 농업·어업 및 임업이 31.0%로 가장 많다. 전국 협동조합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25.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12.6%), 농업·어업 및 임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농업·어업 및 임업이 3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하므로 협동조합의 업종 영역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목표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협동조합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협동조합의 영세성

협동조합 당 출자금이 평균 27,884천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몇 개의 사업자협동조합(5,000만원 이상 13개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아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협동조합의 출자금(총액 3,150,960,000원)은 전국 협동조합(총액 148,783,745,596원)⁵⁾의 약 2.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2,085,080천원(66.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출자금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 규모로 볼 때 이 정도의 출자금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출자금 증액이 요구된다.

다섯째, 목적사업 모델 개발 · 이행 미흡

신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용이한 설립조건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동조합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 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합원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즉 전업농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 협동조합은 경제사업이 중심이 되고, 영세소농은 생활사업, 실익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체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고민 미흡

기존 전통적 협동조합의 상당수는 정책사업과 정책금융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내용을 운용하고 있다. 신규 협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운영노력과 고민 등 협동조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5) 기획재정부(2015.10), 내부자료

일곱째, 사회적협동조합 관련자료 공유

현재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제주 특별자치도와의 자료 공유와 가능하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의 성격과 달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 출자금 제한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최영근(2014),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김신양(2013),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구축과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2015), 내부자료.

기획재정부(2015), 내부자료.